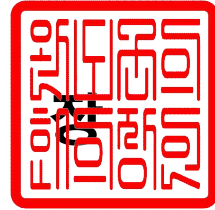


완도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

「완도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완 도 군 의 회 의



1. 조 례 명 : 완도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

2. 발 의 자 : 조 인 호 의원

3. 제정이유

- 노후 어선의 방치로 인한 해양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적절한 폐선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 어선의 기준과 폐선 처리 절차를 정하고, 폐선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적용범위(안 제4조)

- 지원계획(안 제5조)
- 지원대상(안 제6조)
- 폐선 처리 지원 등(안 제7조)
- 어선의 폐선 처리(안 제8조)

5. 관련법령 : 「어선법」

6. 조례안예고기간 : 2026. 1. 6. ~ 2026. 1. 13.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2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7,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2팀(전화: 061-550-59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관내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를 유도하여 연안해역의 해양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 중 선령(船齡)이 25년 이상 어선 또는 중대한 결함으로 어선으로써의 용도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선을 말한다.
2. “폐선 처리”란 해당 어선의 운반, 해체, 절단(파쇄), 폐기물처리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한 최종처분을 말한다.
3. “중대한 결함”이란 태풍, 지진, 화재, 폭발, 사고 등에 의해 선박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운행 시 인명피해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선의 방치 등으로 인한 해양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원부에 등록된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에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구조·기관 노후화로 해양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등 군수가 폐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

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후 어선 현황
2. 노후 어선 폐선 처리와 관련한 종합 대책 수립
3. 노후 어선 폐선 처리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완도군에 5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
2. 5년 이상 해당 어선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어선번호 또는 건조 연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7조(폐선 처리 지원 등) ① 군수는 노후 어선 폐선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선 처리 지원에 대한 신청절차, 지원내용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어선의 폐선 처리) ①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해체·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선 처리 시 「어선법」, 「폐기물관리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폐선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계량증명서, 폐기물 반입영수증 등 폐기물 처리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어선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 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